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 20호

임실군의회 정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26.

임실군의회의장



##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철성 의원)

### 1.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임실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제2조)
- 나.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포상 및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4~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부(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다. 협의 등 : 안전관리과
- 라. 입법예고 : 2024. 4. 26. ~ 2024. 5. 1. (5일간)
- 마. 붙임 :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임실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임실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4조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정철성 의원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